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간사) ①(생략)</p> <p>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u>조사계장</u>이 된다.</p>	<p>제9조(간사) 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u>민원관리계장</u>이 된다.</p>
<p>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u>마포구</u> 소속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u>마포구</u>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p>	<p>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u>구</u> 소속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u>구</u>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u>공무원</u>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u>구 소속 공무원</u>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1994. 7. 6.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6. 28.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6. 30.

다. 상정 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1과장 문 염승)

##### 가. 제출이유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남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각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남세의무자의 중복신고 의무사항을 생략하고, 과세권자의 직권미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남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

##### 나. 주요골자

- 남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의 발급사무를 각동장에게 위임.(안, 제6조의2)
-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남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안,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취득세 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남세의무자의 불편해소(안,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전재)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각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 면허세, 재산세등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았을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 취득세 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 절차를 생략하는등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 됨.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제95조제1항 지방세법 (1994. 1. 7.)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개정 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채운석 위원) : 현재는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고 동장도 발급할 수 있나?
- 답변(문영승 세무1과장) : 현재는 내부위임으로 구청장 명의로 동장이 발급하고 있으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기 위함입니다.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1
------------	-----

제출일자 : 1994. 6. 28.  
제출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각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납세의무자의 중복신고 의무사항을 생략하고, 과세권자의 직권비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함.

## 2. 주요골자

-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사무를 각동장에게 위임(안, 제6조의2)
-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 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안,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취득세 신고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편해소(안,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95조제1항
-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제39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제184조 등
-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제19조 내지 제23조 등

○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제14조 등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 볼필요

####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구세의 세목”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증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증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7조제4항증 “15일”을 “14일”로 한다.

제15조증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2항중 “설치연월일”을 “설치년월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목중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를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본문중 “연월일”을 “년월일”로 하며,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1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2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